#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7.11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00-7244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    | l역여부 |
|-------|-------------------------|--|--------|------|
| 민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br>의정부시 거주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br>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비규     | 제지역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없음    |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 없음   | 미적용    | 민간택지 |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5.07.11.(금) | 2025.07.21.(월) | 2025.07.22.(화) | 2025.07.23.(수) | 2025.07.29.(화) | 2025.08.01.(금)~<br>2025.08.03.(일) | 2025.08.09.(토)~<br>2025.08.11.(월) |

#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u>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u>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1 +1 +1 -4 |           |               | 특별공급  |            |                 | 일반       | <mark>2순위</mark><br>가입<br>-<br>- |
|-------------|-----------|---------------|-------|------------|-----------------|----------|----------------------------------|
| 신청자격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6개월       |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 | 치금 충족 | 1순위(12개월   | 실 이상, 지역별·면적별 ( | 예치금 충족)  | 가입                               |
| 세대주 요건      |           |               | -     | 필요 -       |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          | 적용              | <u>-</u> |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 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특별공급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
| 일반공급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시 추첨) |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
| 월민등급 | 군위될 경점자 선정링립에 따듬<br> |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결정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hoeryong)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워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공급금액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형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네이버<br>인증서 | KB국민<br>인증서 | 토스<br>인증서 | 신한<br>인증서 | 카카오<br>인증서 |
|---------|-------|-------|------------|-------------|-----------|-----------|------------|
| APT     | (     | 0     |            |             | Ο         |           |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운영안내

| 구분      | 오픈일정           | 운영시간        | 위치                        |
|---------|----------------|-------------|---------------------------|
| 견본주택 운영 | 2025.07.18.(금) | 10:00~17:00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314-7번지 |

- ※ 견본주택은 사전예약 없이 일반관람이 가능하나, 실내 인원에 따라 관람이 지연될 수 있으며, 주요 분양일정에 따라 일반 고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 방문시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7.11.(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의정부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본 주택은 기착공 아파트로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중이며, 공정상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이 불가한 점 필히 인지하시어 청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 정            | 2025.07.21.(월)                | 2025.07.22.(화)      | 2025.07.23.(수) | 2025.07.29.(화) | 2025.08.01.(금)~<br>2025.08.03.(일) | 2025.08.09.(토)~<br>2025.08.11.(월) |
| 바버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 (PC·모바일) 청약홈(09:0 | 00 ~ 17:30)    | ■ (PC·모바일) 청약홈 | ■ 사업주체 견본주택                       |                                   |
| <del>8</del> 8 |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 (현장접수) 청약통장 기     | <u> </u>       |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 <u>  호원동 314-7번지)</u>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불가함)
- (수도권&비투기과열지구)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 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의정부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 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제한기간 | 1년   | 1년   |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의정부시 주택과-20854호(2025.07.0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3층 12개동 총 1,816세대 중 일반분양 674세대

※ 공공지원 민간임대 909세대, 공공임대 233세대를 포함한 혼합형 분양주택(임대주택 분양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특별공급 337세대(기관추천 67세대, 다자녀가구 67세대, 신혼부부 122세대, 노부모부양 21세대, 생애최초 6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04월 예정(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지정일은 추후 안내 예정)

■ 공급대상

(단위:m², 세대)

| 모덴 | 도 대 취                      |   | 주택공급면적(m²)  |  |   | 기타   |  | 약 세대별  | 太マユ  |   |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최하층  |
|----|----------------------------|---|---|--|---|--|--|--|--|---|---|---|--|---|--|---|--|
| 모델 | 수택영<br>(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거<br>전용면적  | 주거<br>공용면적   | 소계  | 공용면적<br>(지하주차장등)   | 면전   | 대지지분   | 세대수  | 기관<br>추천  | 다자녀<br>가구   | 신혼<br>부부  | 노부모<br>부양  | 생애<br>최초  | 계  | <sup>설민중급</sup><br>세대수  | 우선배정<br>세대수  |
| 01 | 059.9936A                  | 59A   | 59.9936   | 20.6902  | 80.6838   | 45.0615  | 125.7453   | 32.6068  | 50   | 5   | 5   | 9   | 1  | 4   | 24   | 26  | 2  |
| 02 | 059.9934B                  | 59B   | 59.9934   | 20.1755  | 80.1689   | 45.0613  | 125.2302   | 32.3987  | 109  | 11  | 11  | 20  | 3  | 10  | 55   | 54  | 4  |
| 03 | 059.8626C                  | 59C   | 59.8626   | 20.7406  | 80.6032   | 44.9631  | 125.5663   | 32.5742  | 43   | 4   | 4   | 8   | 1  | 4   | 21   | 22  | 11   |
| 04 | 084.9771A                  | 84A   | 84.9771   | 27.9431  | 112.9202  | 63.8266  | 176.7468   | 45.6344  | 382  | 38  | 38  | 69  | 13   | 34  | 192  | 190   | 13   |
| 05 | 084.9626B                  | 84B   | 84.9626   | 27.7727  | 112.7353  | 63.8158  | 176.5511   | 45.5598  | 40   | 4   | 4   | 7   | 1  | 4   | 20   | 20  | 2  |
| 06 | 084.9533C                  | 84C   | 84.9533   | 27.9193  | 112.8726  | 63.8088  | 176.6814   | 45.6152  | 50   | 5   | 5   | 9   | 2  | 4   | 25   | 25  | 2  |
|    |                            |   |   | 합 계  |   |  |  |  | 674  | 67  | 67  | 122   | 21   | 60  | 337  | 337   | 24   |
|    | 01<br>02<br>03<br>04<br>05 | (전용면적기준)       01     059.9936A       02     059.9934B       03     059.8626C       04     084.9771A       05     084.9626B | 모발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01         059.9936A         59A           02         059.9934B         59B           03         059.8626C         59C           04         084.9771A         84A           05         084.9626B         84B | 모델수택영<br>(전용면적기준)약식표기주거<br>전용면적01059.9936A59A59.993602059.9934B59B59.993403059.8626C59C59.862604084.9771A84A84.977105084.9626B84B84.9626 | 모델수택형<br>(전용면적기준)약식표기주거<br>전용면적주거<br>공용면적01059.9936A59A59.993620.690202059.9934B59B59.993420.175503059.8626C59C59.862620.740604084.9771A84A84.977127.943105084.9626B84B84.962627.772706084.9533C84C84.953327.9193 | 모델수택형<br>(전용면적기준)약식표기주거<br>전용면적주거<br>공용면적소계01059.9936A59A59.993620.690280.683802059.9934B59B59.993420.175580.168903059.8626C59C59.862620.740680.603204084.9771A84A84.977127.9431112.920205084.9626B84B84.962627.7727112.735306084.9533C84C84.953327.9193112.8726 | 모델수택형<br>(천용면적기준)약식표기주거<br>전용면적주거<br>공용면적소계공용면적<br>(지하주차장등)01059.9936A59A59.993620.690280.683845.061502059.9934B59B59.993420.175580.168945.061303059.8626C59C59.862620.740680.603244.963104084.9771A84A84.977127.9431112.920263.826605084.9626B84B84.962627.7727112.735363.815806084.9533C84C84.953327.9193112.872663.8088 | 모델수택형<br>(전용면적기준)약식표기주거<br>전용면적주거<br>공용면적주거<br>공용면적소계공용면적<br>(지하주차장등)계약<br>면적01059.9936A59A59.993620.690280.683845.0615125.745302059.9934B59B59.993420.175580.168945.0613125.230203059.8626C59C59.862620.740680.603244.9631125.566304084.9771A84A84.977127.9431112.920263.8266176.746805084.9626B84B84.962627.7727112.735363.8158176.551106084.9533C84C84.953327.9193112.872663.8088176.6814 | 모델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전용면적 공용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용면적 공용면적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지하주차장등)           01 059.9936A         59A         59.9936         20.6902         80.6838         45.0615         125.7453         32.6068           02 059.9934B         59B         59.9934         20.1755         80.1689         45.0613         125.2302         32.3987           03 059.8626C         59C         59.8626         20.7406         80.6032         44.9631         125.5663         32.5742           04 084.9771A         84A         84.9771         27.9431         112.9202         63.8266         176.7468         45.6344           05 084.9626B         84B         84.9626         27.7727         112.7353         63.8158         176.5511         45.5598           06 084.9533C         84C         84.9533         27.9193         112.8726         63.8088         176.6814         45.6152 | 모델 (천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용면적 공용면적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교육 연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지치지분 (지지지분 (지하주차장등))))))           01         059.9936A         59A         59.9936         20.6902         80.6838         45.0615         125.7453         32.6068         50           02         059.9934B         59B         59.9934         20.1755         80.1689         45.0613         125.2302         32.3987         109           03         059.8626C         59C         59.8626         20.7406         80.6032         44.9631         125.5663         32.5742         43           04         084.9771A         84A         84.9771         27.9431         112.9202         63.8266         176.7468         45.6344         382           05         084.9626B         84B         84.9626         27.7727         112.7353         63.8158         176.5511         45.5598         40           06         084.9533C         84C         84.9533         27.9193         112.8726         63.8088         176.6814         45.6152         50 | 모델 (천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용면적 공용면적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고용면적 대지지분         세내설 전체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기관 전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기관 전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기관 전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기관 전용면적 (지하주차장등)         125.7453         32.6068         50         5           02         059.9934B         59B         59.9934         20.1755         80.1689         45.0613         125.2302         32.3987         109         11           03         059.8626C         59C         59.8626         20.7406         80.6032         44.9631         125.5663         32.5742         43         4           04         084.9771A         84A         84.9771         27.9431         112.9202         63.8266         176.7468         45.6344         382         38           05         084.9626B         84B         84.9626         27.7727         112.7353         63.8158         176.5511         45.5598         40         4           06         084.9533C         84C         84.9533         27.9193         112.8726         63.8088         176.6814         45.6152         50         5 | 모델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용면적 (전용면적기준)         주거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고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지하주차장등)         제내별 대지지분 (제대수 추천 가구 (지하주차장등)         기관 수천 가구 (지하주차장등)           01         059.9936A         59A         59.9936         20.6902         80.6838         45.0615         125.7453         32.6068         50         5         5           02         059.9934B         59B         59.9934         20.1755         80.1689         45.0613         125.2302         32.3987         109         11         11            03         059.8626C         59C         59.8626         20.7406         80.6032         44.9631         125.5663         32.5742         43         4         4           04         084.9771A         84A         84.9771         27.9431         112.9202         63.8266         176.7468         45.6344         382         38         38           05         084.9626B         84B         84.9626         27.7727         112.7353         63.8158         176.5511         45.5598         40         4         4           06         084.9533C         84C         84.9533         27.9193         112.8726         63.8088         176.6814         45.6152         50         5 | 모델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용면적 공용면적 공용면적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고계약 면적 (지하주차장등)         세내설 (지하주차장등)         기관 수천 (지하주차장등)         기관 (지하주차장등) | 모델         수택형<br>(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br>전용면적         주거<br>공용면적         소계<br>(지하주차장등)         계약<br>면적         계약<br>대지지분         제대설<br>서대수         기관<br>추천         다자녀<br>부부         노부모<br>부양           01         059.9936A         59A         59.9936         20.6902         80.6838         45.0615         125.7453         32.6068         50         5         5         9         1           02         059.9934B         59B         59.9934         20.1755         80.1689         45.0613         125.2302         32.3987         109         11         11         20         3           03         059.8626C         59C         59.8626         20.7406         80.6032         44.9631         125.5663         32.5742         43         4         4         8         1           04         084.9771A         84A         84.9771         27.9431         112.9202         63.8266         176.7468         45.6344         382         38         38         69         13           05         084.9626B         84B         84.9626         27.7727         112.7353         63.8158         176.5511         45.5598         40         4         4         7         1           06         084.953 | 모델수택형<br>(전용면적기준)약식표기주거<br>전용면적주거<br>공용면적소계공용면적<br>(지하주차장등)계약<br>면적계약<br>면적세대수기관<br>수천다자녀<br>가구신혼<br>부부노부모생애<br>최초01059.9936A59A59.993620.690280.683845.0615125.745332.6068505591402059.9934B59B59.993420.175580.168945.0613125.230232.398710911112031003059.8626C59C59.862620.740680.603244.9631125.566332.5742434481404084.9771A84A84.977127.9431112.920263.8266176.746845.6344382383869133405084.9626B84B84.962627.7727112.735363.8158176.551145.5598404471406084.9533C84C84.953327.9193112.872663.8088176.681445.61525055924 | 모델         수택형<br>(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br>전용면적         주거<br>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br>(지하주차장등)         계약<br>면적         계약<br>대지지분         세대수<br>부분         가구<br>부부         노부모<br>부양         생애<br>최초         계약<br>부분         세대수<br>부분         기관<br>부부         다자녀<br>부부         보부모<br>부양         생애<br>최초         계<br>4         24           01         059.9936A         59A         59.9936         20.6902         80.6838         45.0615         125.7453         32.6068         50         5         5         9         1         4         24           02         059.9934B         59B         59.9934         20.1755         80.1689         45.0613         125.2302         32.3987         109         11         11         20         3         10         55           03         059.8626C         59C         59.8626         20.7406         80.6032         44.9631         125.5663         32.5742         43         4         4         8         1         4         21           04         084.9771A         84A         84.9771         27.9431         112.9202         63.8266         176.7468         45.6344         382         38         38         69         13         34         192           0 | 모델         수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수 변적         기관 대지지분         다자녀 부부         보부모 생애 보기 생애 최초         계 세대수           01         059.9936A         59A         59.9936         20.6902         80.6838         45.0615         125.7453         32.6068         50         5         5         9         1         4         24         26           02         059.9934B         59B         59.9934         20.1755         80.1689         45.0613         125.2302         32.3987         109         11         11         20         3         10         55         54           03         059.8626C         59C         59.8626         20.7406         80.6032         44.9631         125.5663         32.5742         43         4         4         8         1         4         21         22           04         084.9771A         84A         84.9771         27.9431         112.9202         63.8266         176.7468         45.6344         382         38         38         69         13         34         192         190           05         084.9626B         84B         84.9626         27.7727 <td< td=""></td<>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 × 0.3025 또는 공급면적(m) ÷ 3.3058)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벽체, 주동출입구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을 포함한 기타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본 아파트 주거공용면적을 세대 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재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   |             |           |            |             |             | 공급금액        |             | 계약금         | ÷ (5%)      | 중도금         | (60%)       | 198,205,000<br>198,205,000<br>0 199,080,000<br>0 201,215,000<br>0 202,265,000<br>0 205,450,000<br>0 206,955,000<br>0 208,215,000<br>0 194,250,000<br>0 195,125,000<br>0 197,225,000<br>0 198,275,000<br>0 201,460,000<br>0 202,930,000<br>0 204,190,000<br>0 192,150,000<br>0 192,990,000<br>0 195,125,000 |             |             |             |
|---|-------------|-----------|------------|-------------|-------------|-------------|-------------|-------------|-------------|-------------|-------------|--|-------------|-------------|-------------|
| 약식표기  | 공급세대수       | 동·호       | 층구분        | 해당세대수       | FILTIM      | 기초미         | 711         | 1차          | 2차          | 1차(30%)     | 2차(30%)     | 이도되었어  |             |             |             |
|   |             |           |            |             | 내시미         | 건국미         | 계           | 계약시         | 30일내        | 2025.11.25  | 2026.01.25  | 업주시정일  |             |             |             |
| 약식표기         공급세대수         동·호         흥구분         해당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59A         108동 2호, 4호         1층         1         262,763,200         303,536,800         55           2층         2         263,923,200         304,876,800         55           3층         2         266,753,600         308,146,400         55           4층         2         268,145,600         309,754,400         55           5~9층         10         272,368,000         314,632,000         56           10~19층         19         274,363,200         316,936,800         55           20층이상         14         276,033,600         318,866,400         55           20층이상         14         276,033,600         318,866,400         55           3층         1         257,520,000         297,480,000         55           3층         1         257,520,000         298,820,000         50           3층         1         261,464,000         302,036,000         50           3층         1         261,464,000         303,644,000         50           59층         10         267,078,400         308,521,600         50           10 | 566,300,000 | 5,000,000 | 23,315,000 | 169,890,000 | 169,890,000 | 198,205,000 |             |             |             |             |             |  |             |             |             |
|   |             |           | 2층         | 2           | 263,923,200 | 304,876,800 | 568,800,000 | 5,000,000   | 23,440,000  | 170,640,000 | 170,640,000 | 199,080,000  |             |             |             |
|   |             | 100도 2층   | 3층         | 2           | 266,753,600 | 308,146,400 | 574,900,000 | 5,000,000   | 23,745,000  | 172,470,000 | 172,470,000 | 201,215,000  |             |             |             |
| 59A   | 50          |           | 4층         | 2           | 268,145,600 | 309,754,400 | 577,900,000 | 5,000,000   | 23,895,000  | 173,370,000 | 173,370,000 | 202,265,000  |             |             |             |
|   |             | 4오        | 5~9층       | 10          | 272,368,000 | 314,632,000 | 587,000,000 | 5,000,000   | 24,350,000  | 176,100,000 | 176,100,000 | 205,450,000  |             |             |             |
|   |             |           | 10~19층     | 19          | 274,363,200 | 316,936,800 | 591,300,000 | 5,000,000   | 24,565,000  | 177,390,000 | 177,390,000 | 206,955,000  |             |             |             |
|   |             |           | 20층이상      | 14          | 276,033,600 | 318,866,400 | 594,900,000 | 5,000,000   | 24,745,000  | 178,470,000 | 178,470,000 | 208,215,000  |             |             |             |
|   |             | 1015 25   |            |             |             | 1층          | 1           | 257,520,000 | 297,480,000 | 555,000,000 | 5,000,000   | 22,750,000   | 166,500,000 | 166,500,000 | 194,250,000 |
|   |             |           | 2층         | 1           | 258,680,000 | 298,820,000 | 557,500,000 | 5,000,000   | 22,875,000  | 167,250,000 | 167,250,000 | 195,125,000  |             |             |             |
|   |             |           | 3층         | 1           | 261,464,000 | 302,036,000 | 563,500,000 | 5,000,000   | 23,175,000  | 169,050,000 | 169,050,000 | 197,225,000  |             |             |             |
|   | 50          |           | 4층         | 1           | 262,856,000 | 303,644,000 | 566,500,000 | 5,000,000   | 23,325,000  | 169,950,000 | 169,950,000 | 198,275,000  |             |             |             |
|   |             | 108유 6호   | 5~9층       | 10          | 267,078,400 | 308,521,600 | 575,600,000 | 5,000,000   | 23,780,000  | 172,680,000 | 172,680,000 | 201,460,000  |             |             |             |
|   |             |           | 10~19층     | 20          | 269,027,200 | 310,772,800 | 579,800,000 | 5,000,000   | 23,990,000  | 173,940,000 | 173,940,000 | 202,930,000  |             |             |             |
|   |             |           | 20층이상      | 16          | 270,697,600 | 312,702,400 | 583,400,000 | 5,000,000   | 24,170,000  | 175,020,000 | 175,020,000 | 204,190,000  |             |             |             |
| 298   |             |           | 1층         | 3           | 254,736,000 | 294,264,000 | 549,000,000 | 5,000,000   | 22,450,000  | 164,700,000 | 164,700,000 | 192,150,000  |             |             |             |
|   |             |           | 2층         | 3           | 255,849,600 | 295,550,400 | 551,400,000 | 5,000,000   | 22,570,000  | 165,420,000 | 165,420,000 | 192,990,000  |             |             |             |
|   |             | 100 - 1 - | 3층         | 3           | 258,680,000 | 298,820,000 | 557,500,000 | 5,000,000   | 22,875,000  | 167,250,000 | 167,250,000 | 195,125,000  |             |             |             |
|   | 59          |           | 4층         | 3           | 260,072,000 | 300,428,000 | 560,500,000 | 5,000,000   | 23,025,000  | 168,150,000 | 168,150,000 | 196,175,000  |             |             |             |
|   |             | 3모, 6모    | 5~9층       | 15          | 264,248,000 | 305,252,000 | 569,500,000 | 5,000,000   | 23,475,000  | 170,850,000 | 170,850,000 | 199,325,000  |             |             |             |
|   |             |           | 10~19층     | 30          | 266,243,200 | 307,556,800 | 573,800,000 | 5,000,000   | 23,690,000  | 172,140,000 | 172,140,000 | 200,830,000  |             |             |             |
|   |             |           | 20층이상      | 2           | 267,913,600 | 309,486,400 | 577,400,000 | 5,000,000   | 23,870,000  | 173,220,000 | 173,220,000 | 202,090,000  |             |             |             |
| 59C   | 43          | 101동 1호,  | 1층         | 1           | 258,912,000 | 299,088,000 | 558,000,000 | 5,000,000   | 22,900,000  | 167,400,000 | 167,400,000 | 195,300,000  |             |             |             |

|      |       |                            |         |       |             | 공급금액        |             | 계약금       | <b>∃</b> (5%) | 중도금         | (60%)       | 잔금 (35%)<br>입주지정일 |
|------|-------|----------------------------|---------|-------|-------------|-------------|-------------|-----------|---------------|-------------|-------------|-------------------|
| 약식표기 | 공급세대수 | 동·호                        | 층구분     | 해당세대수 | FILTIM      | 기초미         | 711         | 1차        | 2차            | 1차(30%)     | 2차(30%)     | 이도되되어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시       | 30일내          | 2025.11.25  | 2026.01.25  | 입주시정일             |
|      |       |                            | 2층      | 1     | 260,025,600 | 300,374,400 | 560,400,000 | 5,000,000 | 23,020,000    | 168,120,000 | 168,120,000 | 196,140,000       |
|      |       |                            | 3층      | 1     | 262,856,000 | 303,644,000 | 566,500,000 | 5,000,000 | 23,325,000    | 169,950,000 | 169,950,000 | 198,275,000       |
|      |       | 6호                         | 4층      | 1     | 264,248,000 | 305,252,000 | 569,500,000 | 5,000,000 | 23,475,000    | 170,850,000 | 170,850,000 | 199,325,000       |
|      |       | 05                         | 5~9층    | 8     | 268,563,200 | 310,236,800 | 578,800,000 | 5,000,000 | 23,940,000    | 173,640,000 | 173,640,000 | 202,580,000       |
|      |       |                            | 10~19층  | 20    | 270,512,000 | 312,488,000 | 583,000,000 | 5,000,000 | 24,150,000    | 174,900,000 | 174,900,000 | 204,050,000       |
|      |       |                            | 20층이상   | 11    | 272,228,800 | 314,471,200 | 586,700,000 | 5,000,000 | 24,335,000    | 176,010,000 | 176,010,000 | 205,345,000       |
|      |       | 104동 3호                    | 1층      | 12    | 372,638,400 | 430,461,600 | 803,100,000 | 5,000,000 | 35,155,000    | 240,930,000 | 240,930,000 | 281,085,000       |
|      |       | 104등 3호<br>105동 1호, 3호     | 2층      | 12    | 374,216,000 | 432,284,000 | 806,500,000 | 5,000,000 | 35,325,000    | 241,950,000 | 241,950,000 | 282,275,000       |
|      |       | 106동 1호, 4호                | 3층      | 12    | 378,160,000 | 436,840,000 | 815,000,000 | 5,000,000 | 35,750,000    | 244,500,000 | 244,500,000 | 285,250,000       |
|      | 359   | 107동 1호, 4호<br>109동 1호, 3호 | 4층      | 12    | 380,108,800 | 439,091,200 | 819,200,000 | 5,000,000 | 35,960,000    | 245,760,000 | 245,760,000 | 286,720,000       |
|      |       | 110동 3호                    | 5~9층    | 60    | 386,048,000 | 445,952,000 | 832,000,000 | 5,000,000 | 36,600,000    | 249,600,000 | 249,600,000 | 291,200,000       |
|      |       | 111동 3호                    | 10~19층  | 119   | 388,832,000 | 449,168,000 | 838,000,000 | 5,000,000 | 36,900,000    | 251,400,000 | 251,400,000 | 293,300,000       |
| 84A  |       | 112동 2호                    | 20층이상   | 132   | 391,198,400 | 451,901,600 | 843,100,000 | 5,000,000 | 37,155,000    | 252,930,000 | 252,930,000 | 295,085,000       |
|      |       |                            | 1층      | 1     | 368,694,400 | 425,905,600 | 794,600,000 | 5,000,000 | 34,730,000    | 238,380,000 | 238,380,000 | 278,110,000       |
|      |       |                            | 2층      | 1     | 370,272,000 | 427,728,000 | 798,000,000 | 5,000,000 | 34,900,000    | 239,400,000 | 239,400,000 | 279,300,000       |
|      | 23    |                            | 3층      | 1     | 374,216,000 | 432,284,000 | 806,500,000 | 5,000,000 | 35,325,000    | 241,950,000 | 241,950,000 | 282,275,000       |
|      |       | 103동 4호                    | 4층      | 1     | 376,164,800 | 434,535,200 | 810,700,000 | 5,000,000 | 35,535,000    | 243,210,000 | 243,210,000 | 283,745,000       |
|      |       |                            | 5~9층    | 5     | 382,104,000 | 441,396,000 | 823,500,000 | 5,000,000 | 36,175,000    | 247,050,000 | 247,050,000 | 288,225,000       |
|      |       |                            | 10~19층  | 10    | 384,888,000 | 444,612,000 | 829,500,000 | 5,000,000 | 36,475,000    | 248,850,000 | 248,850,000 | 290,325,000       |
|      |       |                            | 20층이상   | 4     | 387,254,400 | 447,345,600 | 834,600,000 | 5,000,000 | 36,730,000    | 250,380,000 | 250,380,000 | 292,110,000       |
|      |       |                            | 1층      | 1     | 366,096,000 | 422,904,000 | 789,000,000 | 5,000,000 | 34,450,000    | 236,700,000 | 236,700,000 | 276,150,000       |
|      |       |                            | 2층      | 1     | 367,673,600 | 424,726,400 | 792,400,000 | 5,000,000 | 34,620,000    | 237,720,000 | 237,720,000 | 277,340,000       |
|      |       |                            | 3층      | 1     | 371,617,600 | 429,282,400 | 800,900,000 | 5,000,000 | 35,045,000    | 240,270,000 | 240,270,000 | 280,315,000       |
|      | 26    | 104동 2호                    | 4층      | 1     | 373,566,400 | 431,533,600 | 805,100,000 | 5,000,000 | 35,255,000    | 241,530,000 | 241,530,000 | 281,785,000       |
|      |       |                            | 5~9층    | 5     | 379,505,600 | 438,394,400 | 817,900,000 | 5,000,000 | 35,895,000    | 245,370,000 | 245,370,000 | 286,265,000       |
|      |       |                            | 10~19층  | 10    | 382,243,200 | 441,556,800 | 823,800,000 | 5,000,000 | 36,190,000    | 247,140,000 | 247,140,000 | 288,330,000       |
| 84B  |       |                            | 20층이상   | 7     | 384,609,600 | 444,290,400 | 828,900,000 | 5,000,000 | 36,445,000    | 248,670,000 | 248,670,000 | 290,115,000       |
|      |       |                            | 1층      | 1     | 362,152,000 | 418,348,000 | 780,500,000 | 5,000,000 | 34,025,000    | 234,150,000 | 234,150,000 | 273,175,000       |
|      |       |                            | 2층      | 1     | 363,729,600 | 420,170,400 | 783,900,000 | 5,000,000 | 34,195,000    | 235,170,000 | 235,170,000 | 274,365,000       |
|      |       | 1025 2                     | 3층      | 1     | 367,673,600 | 424,726,400 | 792,400,000 | 5,000,000 | 34,620,000    | 237,720,000 | 237,720,000 | 277,340,000       |
|      | 14    | 103동 3호                    | 4층      | 1     | 369,622,400 | 426,977,600 | 796,600,000 | 5,000,000 | 34,830,000    | 238,980,000 | 238,980,000 | 278,810,000       |
|      |       |                            | 5~9층    | 5     | 375,561,600 | 433,838,400 | 809,400,000 | 5,000,000 | 35,470,000    | 242,820,000 | 242,820,000 | 283,290,000       |
|      |       |                            | 10~19층  | 5     | 378,299,200 | 437,000,800 | 815,300,000 | 5,000,000 | 35,765,000    | 244,590,000 | 244,590,000 | 285,355,000       |
|      |       |                            | 1층      | 1     | 366,560,000 | 423,440,000 | 790,000,000 | 5,000,000 | 34,500,000    | 237,000,000 | 237,000,000 | 276,500,000       |
| 84C  | 25    | 107동 5호                    | 2층      | 1     | 368,137,600 | 425,262,400 | 793,400,000 | 5,000,000 | 34,670,000    | 238,020,000 | 238,020,000 | 277,690,000       |
|      |       |                            | c<br>3층 | 1     | 372,081,600 | 429,818,400 |             | 5,000,000 | 35,095,000    | 240,570,000 | 240,570,000 | 280,665,000       |

|      |       |         |        |       |             | 공급금액        |             | 계약금       | ₹ (5%)     | 중도금         | (60%)       | 25 282,135,000<br>000 286,615,000<br>000 288,680,000<br>000 290,465,000<br>000 273,525,000 |
|------|-------|---------|--------|-------|-------------|-------------|-------------|-----------|------------|-------------|-------------|--|
| 약식표기 | 공급세대수 | 동·호     | 층구분    | 해당세대수 | ∥대수 대지비 건축  | 거츠비         | 계           | 1차        | 2차         | 1차(30%)     | 2차(30%)     | 이즈키저이  |
|      |       |         |        |       |             | 신국의         | 711         | 계약시       | 30일내       | 2025.11.25  | 2026.01.25  | ᆸᅮᄭᅙᄅ  |
|      |       |         | 4층     | 1     | 374,030,400 | 432,069,600 | 806,100,000 | 5,000,000 | 35,305,000 | 241,830,000 | 241,830,000 | 282,135,000  |
|      |       |         | 5~9층   | 5     | 379,969,600 | 438,930,400 | 818,900,000 | 5,000,000 | 35,945,000 | 245,670,000 | 245,670,000 | 286,615,000  |
|      |       |         | 10~19층 | 10    | 382,707,200 | 442,092,800 | 824,800,000 | 5,000,000 | 36,240,000 | 247,440,000 | 247,440,000 | 288,680,000  |
|      |       |         | 20층이상  | 6     | 385,073,600 | 444,826,400 | 829,900,000 | 5,000,000 | 36,495,000 | 248,970,000 | 248,970,000 | 290,465,000  |
|      |       |         | 1층     | 1     | 362,616,000 | 418,884,000 | 781,500,000 | 5,000,000 | 34,075,000 | 234,450,000 | 234,450,000 | 273,525,000  |
|      |       |         | 2층     | 1     | 364,193,600 | 420,706,400 | 784,900,000 | 5,000,000 | 34,245,000 | 235,470,000 | 235,470,000 | 274,715,000  |
|      |       |         | 3층     | 1     | 368,137,600 | 425,262,400 | 793,400,000 | 5,000,000 | 34,670,000 | 238,020,000 | 238,020,000 | 277,690,000  |
|      | 25    | 103동 1호 | 4층     | 1     | 370,086,400 | 427,513,600 | 797,600,000 | 5,000,000 | 34,880,000 | 239,280,000 | 239,280,000 | 279,160,000  |
|      |       |         | 5~9층   | 5     | 376,025,600 | 434,374,400 | 810,400,000 | 5,000,000 | 35,520,000 | 243,120,000 | 243,120,000 | 283,640,000  |
|      |       |         | 10~19층 | 10    | 378,763,200 | 437,536,800 | 816,300,000 | 5,000,000 | 35,815,000 | 244,890,000 | 244,890,000 | 285,705,000  |
|      |       |         | 20층이상  | 6     | 381,129,600 | 440,270,400 | 821,400,000 | 5,000,000 | 36,070,000 | 246,420,000 | 246,420,000 | 287,490,000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정은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법 시행령」제60조)
-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 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금액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해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인지세는 납부기한 내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50%씩 균등납부)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 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분양대금 및 유상옵션 대금(중도금 및 잔금) 납부 시 은행 전산망 장애 등으로 오류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납부일 은행 업무 시간 내 납부를 권장합니다.
- ※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의 중도금 중 일부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대출 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 ※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15일 이후에는 미납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 부적격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 부과됩니다.

# 4 특별공급

##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 구             | 59A                 | 59B | 59C | 84A | 84B | 84C | 합 계 |     |
|---------------|---------------------|-----|-----|-----|-----|-----|-----|-----|
|               | 국가유공자               | 1   | 2   | -   | 6   | 1   | -   | 10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2   | 1   | 6   | -   | 1   | 10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1   | 1   | 6   | 1   | 1   | 10  |
|               | 중소기업근로자             | 1   | 2   | -   | 5   | 1   | 1   | 10  |
|               | 장애인                 | 3   | 4   | 2   | 15  | 1   | 2   | 27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의정부시 및 경기도 거주자(50%) | 3   | 6   | 2   | 19  | 2   | 3   | 35  |
| 니시네기구 국일하다    | 서울시 및 인천시 거주자(50%)  | 2   | 5   | 2   | 19  | 2   | 2   | 32  |
| <br>신혼부부 특별공급 |                     | 9   | 20  | 8   | 69  | 7   | 9   | 122 |
| 노부모           | 1                   | 3   | 1   | 13  | 1   | 2   | 21  |     |
| 생아            | 4                   | 10  | 4   | 34  | 4   | 4   | 60  |     |
|               | 24                  | 55  | 21  | 192 | 20  | 25  | 337 |     |

<sup>※</sup>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 조항             | 특별공급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 제1항<br>(배우자의   | 신혼부부<br>생애최초<br>신생아(공공) | 청약신청자의 <b>배우자</b> 가 <b>혼인 전 당첨된 이력</b> 에 따른 <b>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b><br>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적용횟수 제한 없음   |
| 혼인 전<br>이력 배제) |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b>배우자</b> 가 <b>혼인 전 주택을 소유</b> 한 사실이 있더라도<br>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TOXT ME INC  |
| 제2항<br>(혼인특례)  |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br>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b>혼인특례</b> 는 <b>본인 기준 1회</b> 에 한하여<br>적용 가능                             |
| 제3항            | 다자녀가구<br>신혼부부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br>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br>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 <b>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b> 에 한하여<br>적용 가능                                     |
| (출산특례)         |                         |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br>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br>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b>다른 청약 제한사항</b><br>은 배제할 수 없음<br>-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회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분   | 내용  |  |  |  |  |  |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제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  |  |  |  |  |
|      |   | 구분   | 처리방법   |  |  |  |  |
|      | 당첨자빌  | b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  |  |  |  |
| 공급기준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b>무효</b> 처리     |  |  |  |  |
|      |   | TT/1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  |  |  |
|      |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b>부적격</b> 처리                                   |  |  |  |  |
|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  |  |  |  |
|      |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  |  |  |  |  |  |
|      | 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  |  |  |  |  |
|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  |  |  |  |  |
| 무주택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                     | 세대구성원 요건   |  |  |  |  |
| 요건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  | 주택세대주 요건                                   |  |  |  |  |  |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트벽공근 유형벽로 | 시청자이 청약통장   | 자격요거옥 간추어야 한니다              |
|------------------|-----------|-------------|-----------------------------|
| ■ AT BTATBOTE DA |           | 1,001-01-00 | N 1 # 1 2 F T N N G G G G G |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통장

자격요건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구 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의정부시 및 경기도          |  |  |
|--------------|---------------|------------|---------------------|--|--|
| т - Е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 전용면적 85m²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sup>※ &#</sup>x27;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7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b><br>■ <b>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b>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추천기관        |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경기북부 보훈지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 장애인 : 경기도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인천광역시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당첨자<br>선정방법 | <ul>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li> </ul> |

<sup>※</su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용

#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구분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7세대

|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b> 하는 <b>무주택세대구성원</b>  |                |                          |          |   |  |  |  |  |
|------------|--|----------------|--------------------------|----------|---|--|--|--|--|
|            |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  | [더라도 입주        | 드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시          | 네대구성     | 원이면 신청가능함   |  |  |  |  |
| 대상자        |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                          |          |   |  |  |  |  |
|            |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                          |          |   |  |  |  |  |
|            | ■ 청약통장 가입기간 6  | 개월 경과(지        | 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한 분      |   |  |  |  |  |
|            | ■ 당첨자 선정 순서 : 🤇  | 1)지역 → ②       | )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 → ④청약    | <sup>뱎</sup>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  |  |  |
|            | ■ ① <b>지역</b> : 해당 시·도 :   | 거주자 <b>(의정</b> | <b>부시 및 경기도) 50%</b> → 기 | 타수도권     | 면 거주자 <b>(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50</b> %   |  |  |  |  |
|            | - 해당 시·도(의정부시  | 및 경기도)0        | ∥서 경쟁 발생 시 해당주택?         | 건설지역     | (의정부시)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  |  |  |  |
|            | - 해당 시·도(의정부시  | 및 경기도)이        | 세서 낙첨될 경우, 낙첨자는          | 나머지      | 50% 물량에서 기타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경쟁 시 상기 당  |  |  |  |  |
|            | 참자 선정 순서에서 혀   | 해당지역 거         | 주자 우선공급은 적용되지 (          | 깧습니다     | <del>.</del> .  |  |  |  |  |
|            | ■ ②배점  |                |                          |          |   |  |  |  |  |
|            | 메저하다   | ᄎᄜᅯ            | 배점기준                     |          | ш¬  |  |  |  |  |
|            | 배점항목   | 총배점            | 기준                       | 점수       | 비고  |  |  |  |  |
|            | 계  | 100            |                          |          |   |  |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4명 이상                    | 40       | 이즈지다지고그의 함께 마스에 마다의 마셔너 지너(데의 이어지너 교회)  |  |  |  |  |
| 당첨자<br>당첨자 |  |                | 3명<br>2명                 | 35<br>2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
| 선정방법       |  | 15             | <br>3명 이상                | 15       |   |  |  |  |  |
|            | 영유아 자녀수(2)   |                | 2명                       | 1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
|            |  |                | 1명                       | 5        |   |  |  |  |  |
|            |  |                | 3세대 이상                   | 5        |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br>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  |  |  |
|            | 세대구성(3)  | 5              |                          |          | 도구년 의기 3년 이용 계득하여 등을 구인응속표응손에 등세<br> -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  |  |  |  |
|            |  |                | 한부모 가족                   | 5        |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  |  |  |  |
|            |  |                | 10년 이상                   | 20       |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  |  |  |  |
|            |  |                | , -                      | -        |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  |  |  |
|            | 무주택기간(4)   | 20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  |  |  |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  |  |  |  |

|  |        |                |    |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케다 내트  |        | 10년 이상         | 15 |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경기,                                   |
| 해당 시·도   | 15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서울, 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 거주기간(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                                   |
|  |        | 16 90 36 96    |    | 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b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 납무시도입승보을 현재 중국현중시의 기업기단을 기준으로 아버 납무시시국의 중류, 급곡,<br>-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  |        |                |    |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어 |        |                |    |  |
| (3) : 한부모 가족의 경  | 경우 한부모 | 가족증명서로 확인      |    |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
| (4), (5) : 주민등록표등  | 등본이나 주 | 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122세대

| 내용  |   |   |  |  |  |  |  |
|---|---|---|--|--|--|--|--|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  |  |  |  |  |
| ■ 당첨자 선정 순/<br>■ ①소득구분  | <b>서</b>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  |  |  |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  |  |
| 1단계 <b>신생아 우선공급 (25%)</b>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br>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  |  |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br>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  |  |  |
| 3단계   | 우선공급 (2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  |  |  |
| 4단계   | 일반공급 (1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  |  |  |
| 5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br>※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   |  |  |  |  |  |
|   | ■ 혼인기간이 7년 ■ 「신혼부부 주택 ■ 청약통장 가입기 ■ 당첨자 선정 순   ■ ①소득구분 |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2단계       오단계         4단계       일반공급 (10%)         5단계       추첨공급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 |  |  |  |  |  |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의정부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②순위

| 순위  | 내용  |
|-----|---|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 ③지역: 해당지역 거주자(의정부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비고 ■ 소득기준

### - 소득 확인 시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025. 07. 11.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 шо                 | 소득금액                       |                            |                            |                            |                             |                             |  |
|------------------|------------------------|--------------------|----------------------------|----------------------------|----------------------------|----------------------------|-----------------------------|-----------------------------|--|
|                  |                        | 비 <del>율</del>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신생아우선공급,<br>우선공급 | 부부 중 한 명만<br>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205,312원                | ~8,578,088원                | ~9,031,048원                | ~9,733,086원                | ~10,435,124원                | ~11,137,162원                |  |
|                  | 부부 모두<br>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br>120% 이하 | ~8,646,374원                | ~10,293,706원               | ~10,837,258원               | ~11,679,703원               | ~12,522,149원                | ~13,364,594원                |  |
| 신생아일반공급,         | 부부 중 한 명만<br>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br>140% 이하 | 7,205,313원~<br>10,087,437원 | 8,578,089원~<br>12,009,323원 | 9,031,049원~<br>12,643,467원 | 9,733,087원~<br>13,626,320원 | 10,435,125원~<br>14,609,174원 | 11,137,163원~<br>15,592,027원 |  |
| 일반공급             | 부부 모두                  | 120% 초과            | 8,646,375원~                | 10,293,707원~               | 10,837,259원~               | 11,679,704원~               | 12,522,150원~                | 13,364,595원~                |  |

|               |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이하                | 11,528,499원  | 13,724,941원  | 14,449,677원  | 15,572,938원  | 16,696,198원  | 17,819,459원  |
|---------------|------------------------|------------------------|--------------|--------------|--------------|--------------|--------------|--------------|
| 추첨공급          | 부부 중 한 명만<br>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br>부동산가액 충족 | 10,087,438원~ | 12,009,324원~ | 12,643,468원~ | 13,626,321원~ | 14,609,175원~ | 15,592,028원~ |
| Т <u>ё</u> бы | 부부 모두<br>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br>부동산가액 충족 | 11,528,500원~ | 13,724,942원~ | 14,449,678원~ | 15,572,939원~ | 16,696,199원~ | 17,819,460원~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금액 |     | 내용  |   |   |  |
|----------------|----|-----|---|---|---|--|
|                |    |     | - 건축물기<br>시가표준  |   | 는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  |
|                |    | 건축물 |   | 건축물 종류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T = i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주택 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부동산<br>(건물+토지) |    |     | 단, 아래<br>* 「농지법<br>* 동업인:<br>* 「초지법<br>* 다가증!<br>* 공부상<br>* 종중소-<br>제한을 | 경우는 제외<br>네」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음<br>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br>네」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br>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br>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유<br>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br>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 | 용되고 있는 경우<br>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일 현재 <b>의정부시에 거</b>  | 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               | ·<br>-<br>-<br>-<br>-<br>-<br>-<br>-<br>-<br>-<br>-<br>-<br>-<br>- | · 무주택세대주                          |          |  |  |  |  |
|      |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                                       |  |                                   |          |  |  |  |  |
|      |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                                       |  |                                   |          |  |  |  |  |
| 대상자  |   | •                    | ,                                     |  | 는에 8세되어 쓰는 8구에 한급/ <b>한 분</b>     |          |  |  |  |  |
| 대상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b>'부양'</b> 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b>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b> 을 의미함       |                      |                                       |  |                                   |          |  |  |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되」제28조제1항의 <b>1순</b> | 위에 해당하는 분                             |  |                                   |          |  |  |  |  |
|      | - 청약통장 가입기간 <b>12</b>   | <b>개월</b> 경과(지역별·면적! | 별 예치금액 이상)                            |  |                                   |          |  |  |  |  |
|      | ■ 다처자 서저 스서 : ①   | মাঞা _ কাসন _ ক      |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이번과어나 기조되  |                                   |          |  |  |  |  |
|      |   |                      |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서울특별시                 |  |                                   |          |  |  |  |  |
|      | <b>■ ②가점</b> : 「주택공급에   | 관한 규칙」 별표1(가?        | 덬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 <del>[</del>    | 를 기준으로 당첨자   | 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 기재 오류에 으 |  |  |  |  |
|      | 못으로 판명됨   | 될 경우 부적격 당첨 치        | l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               | 약신청자에게 있음  |                                   |          |  |  |  |  |
|      |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   | 택공급에 관한 규칙」 [        | 별표1의2 나목)                             |  |                                   |          |  |  |  |  |
|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br>                          | 점수       |  |  |  |  |
|      | ①무주택기간  | 120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
|      |   | 32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 당첨자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      |   |                      | <u> 7년 이상 ~ 8년 미만</u>                 | 16   | . 51                              |          |  |  |  |  |
| 선정방법 |   |                      | <u>0</u> 8                            | 5  | <u> 4명</u>                        | 25       |  |  |  |  |
|      | ②부양가족수  | 35                   | <u> 1명</u>                            | 10   | 5 <u>B</u>                        | 30       |  |  |  |  |
|      |   |                      | <u>2명</u><br>3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      |   |                      | 3명<br>6개월 미만                          | 2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
|      |   |                      | <br>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8년 이성 ~ 9년 미년<br>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      |   |                      | 0개월 이상 ~ 1년 미년<br>1년 이상 ~ 2년 미만       | 3  | 9년 이상 ~ 10년 미년<br>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      | ③ 입주자저축   | 17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      | 가입기간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
|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 1) + (2) + (3)   |                                   |          |  |  |  |  |
|      |   |                      |                                       | h저축 가입기간 점=  |                                   |          |  |  |  |  |

|    |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
|    |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 비고 |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60세대

| 구분   |   |                   | 내용  |  |  |  |
|------|---|-------------------|---|--|--|--|
| 대상자  |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m'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   |  |  |  |
|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                   |   |  |  |  |
| 당첨자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br>(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br>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
| 선정방법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br>(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
|      | 3단계   | 우선공급<br>(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

| 4단계 | 일반공급<br>(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
| 5단계 | ( = 1 )       | 혼인 중이거나<br>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br>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추첨공급          |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br>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해당지역 거주자(의정부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 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025. 07. 11.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 A = 7 H                 |                        | 소득금액                       |                             |                             |                             |                             |                             |
|------------------|-------------------------|------------------------|----------------------------|-----------------------------|-----------------------------|-----------------------------|-----------------------------|-----------------------------|
| 소득구분             |                         |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생아우선공급,<br>우선공급 |                         | 130% 이하                | ~9,366,906원                | ~11,151,514원                | ~11,740,362원                | ~12,653,012원                | ~13,565,661원                | ~14,478,311원                |
| 신생아일반공급,<br>일반공급 |                         | 130% 초과<br>160% 이하     | 9,366,907원~<br>11,528,499원 | 11,151,515원~<br>13,724,941원 | 11,740,363원~<br>14,449,677원 | 12,653,013원~<br>15,572,938원 | 13,565,662원~<br>16,696,198원 | 14,478,312원~<br>17,819,459원 |
|                  | 혼인 중이거나<br>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br>부동산가액 충족 | 11,528,500원~               | 13,724,942원~                | 14,449,678원~                | 15,572,939원~                | 16,696,199원~                | 17,819,460원~                |
| 추첨공급             | 1인 가구                   | 160% 이하                | ~11,528,499원               | ~13,724,941원                | ~14,449,677원                | ~15,572,938원                | ~16,696,198원                | ~17,819,459원                |
|                  | 16 711                  | 160% 초과하나,<br>부동산가액 충족 | 11,528,500원~               | 13,724,942원~                | 14,449,678원~                | 15,572,939원~                | 16,696,199원~                | 17,819,460원~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금액              |     | 내용  |                            |   |  |  |
|----------------|-----------------|-----|---|----------------------------|---|--|--|
|                |                 |     | - 건축물가<br>시가표준  |                            | 그는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  |  |
|                |                 | 건축물 |   | 건축물 종류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br>단독주택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br>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주택 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부동산<br>(건물+토지) | 3억3,100만원<br>이하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만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중 |                            |   |  |  |

##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 =  | 구분         | 내용   |  |  |  |  |  |
|----|------------|--|--|--|--|--|--|
| CH | <b>내상자</b>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  |  |  |  |

####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청약통장 자격요건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 H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의정부시 및 경기도          |  |
|---------------|---------------|------------|---------------------|--|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전용면적 85m²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 전용면적 102m²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 전용면적 135m²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자(의정부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 당첨자 선정방법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
| 전용면적 60㎡ 이하          | 40% | 60% |
|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 | 40% | 60% |

##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①무주택기간 | 32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32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12년 이상 ~ 13년 미민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     |               | 0명                  | 5  | 4명              | 25 |
| ②부양가족수                   | 35  |               | 1명                  | 10 | 5명              | 30 |
|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17  |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본인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③입주자저축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가입기간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기법기단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배우: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HU O TL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                          |     | 비누시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3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                     |    |                 |    |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 점수 |
|-----------------|-------------------------|----|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 구 분            | 내용  |
|----------------|---|
| ①무주택기간<br>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br>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br>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

|                |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
|----------------|--|
|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                |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
|                |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
|                |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                           |
|                | 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
|                |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
|                |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
|                |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
|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 <b>부양</b> '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b>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b> 을 의미함                           |
|                |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                           |
|                | 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
|                |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                            |
|                |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                | - 외국인 직계존속   |
|                |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
|                |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 ②부양가족의         |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                    |
| 인정 적용기준        |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                |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                |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
|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                |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                |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                |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                |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                |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br>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 ③입주자저축<br>가입기간 | 합무사시국의 충규, 금액, 가입자 영의면경들 안 경우에도 최조 가입일을 기군으로 가입기간을 신경<br>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u> </u>       |  |
| 무주택기간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
| 산정기준           |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                |  |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단계  | 비율          | 내용       |
|-----|-------------|----------|
| 1단계 | 추첨제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    | 2단계   |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  |
|----|---|-------------------------------------|--|--|--|
|    | 3단계   |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  |
|    | ■ ③청약통장 가입기건  |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               | 함  |  |  |
|    | - 입주자저축의 종류,  |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  |
|    | -   |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 날을 기준으로 함  |  |  |
|    | ■ 1순위 가점제 청약 /  | 시 유의사항                              |  |  |  |
|    |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  | l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            |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  |
|    | - 1순위 가점제 당첨  | 니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             | 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  |
|    | ■ 주택소유에 의한 유역   | 비사항                                 |  |  |  |
|    |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  |
|    |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  |  |  |
| 비고 | - 주택은 전국에 소재  | 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즉              |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  |  |
|    | 말한다] 전원(공급신   | 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  |  |
|    |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 면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 <sup>니</sup> | 니다.  |  |  |
|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 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 <u>:</u>     |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  |
|    |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                                     |  |  |  |
|    |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                                     |  |  |  |
|    | 취소합니다.  |                                     |  |  |  |

# 주택소유 참고사항

| ■ 주택소유여-                       | 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 주택처분<br>기준일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 주택을<br>소유하지<br>않은 것으로<br>보는 경우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br>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br>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br>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br>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br>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 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 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m²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 단독주택             |         |         |      |
| 제53조제9호나목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85m² 이하 | 5억원     | 3억원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br>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br>생애최초 | 2025년 07월 21일(월)<br>(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br>(견본주택 : 10:00~14:00) | • 인터넷 청약(PC 또는 스마트폰) | <ul>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li> <li>PC: www.applyhome.co.kr</li> <li>스마트폰앱</li> <li>견본주택: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314-7번지</li> </ul> |
| 일반공급 | 1순위                                      | 2025년 07월 22일(화) 09:00~17:30   | • 한다켓 성격(FC 또는 그리트론)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www.applyhome.co.kr   |
| 달년등급 | 2순위                                      | 2025년 07월 23일(수) 09:00~17:30   |                      | - 스마트폰앱<br>•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증서, 토스인증서, 카카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            | 필요서류  |   |
|------------|---|---|
|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
| 본인 신청 시    |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
|            |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            |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 제3자 대리신청 시 |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
| 추가서류       |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
| (배우자 포함)   |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            |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   |
|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
|            |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마이데이터<br>('청약도움e')<br>서비스 |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br>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br>-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br>- <b>이용방법</b>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  |
|---------------------------|---|--|--|
| (민영주택)<br>공고단지<br>청약연습    |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br>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br>·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br>· <b>이용방법</b>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
| 당첨자발표<br>서비스              |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7.29.(화) ~ 2025.08.07(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  ****  ***  ***  ***  ***   |  |  |

| - <b>제공일시</b> : 2025.07.29.(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 |
|---|
|---|

####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 (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문자

| 구분                       | 자격확인 서류제출 일시                                    | 서류제출 장소                                     |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 2025.08.01.(금) ~ 2025.08.03.(일) , 10:00 ~ 16:00 |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견본주택<br>(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314-7번지) |

- |※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ㆍ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
- 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 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 을 방문, 청약 신청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자격검증 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및 사업 관계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당첨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기간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 능합니다.
- ▶ 공급계약 체결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않을 시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에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청약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미소명 시 에는 부적격 처리됨. 또한, 서류 미제출로 인해 자격검증이 불가할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 하시 기 바랍니다.
- ▶ 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자격검증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인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은 견본주택 방문 접수 예정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소명 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 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 ■ <표1>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제출서류

|          | 서류 | 유형          |                        |      |  |
|----------|----|-------------|------------------------|------|--|
| 구분       | 필수 | 추가<br>(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0           | ①특별공급 신청서              | -    | •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견본주택에 비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작성 및 제출]<br>•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 0           | ②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청약홈에서 발급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제출]<br>•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0  |             | ③서약서                   | -    | •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견본주택에 비치  |
| 7 = 11 7 | 0  |             | ④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견본주택에 비치  |
| 공통서류     | 0  |             | ⑤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br>※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 0  |             | ⑥인감증명서 또는<br>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 신청(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0  |             | ⑦인감도장 또는 서명            | 본인   |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대리서명 불가)   |
|          | 0  |             | ⑧주민등록표등본 (전체)          | 본인   | • 발급형태 "전체" or "선택" 중 "전체 발급"  |

|                 | 서류 |             |                         |                 |   |
|-----------------|----|-------------|-------------------------|-----------------|---|
| 구분              | 필수 | 추가<br>(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           |                         |                 | (※ 세대 구성 정보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본인 및 세대원 전체 표기 등)  |
|                 |    | 0           | ⑨주민등록표등본 (전체)           | 배우자             |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된 경우 (발급형태 "전체" or "선택" 중 "전체 발급")<br>(※ 세대 구성 정보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본인 및 세대원 전체 표기 등)  |
|                 | 0  |             | ⑩주민등록표초본 (전체)           | 본인              | • 발급형태 "전체" or "선택" 중 "전체 발급"<br>  (※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
|                 | 0  |             | ⑪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공개("상세"로 발급)  |
|                 | 0  |             | ⑩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본인              | •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 표기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해당서류 제외 / 개명자는 개명 전 서류 포함하여 제출)  |
|                 |    | 0           | ③복무확인서 (복부기간 표기)        | 본인              | • 수도권(경기,서울,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 40.7.0.7        | 0  |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본인              | • 청약 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재직증명서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및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필수 제출 |
| 해외근무자<br>(단신부임) |    | 0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br>세대원     |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br>※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br>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 0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배우자<br>및<br>세대원 |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 표기<br>• 세대원 및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 기관추천<br>특별공급    | 0  |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추천명부로 접수)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0  |             | 다자녀 배점 기준표              | -               | •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견본주택에 비치 (배점표)   |
|                 |    | 0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br>또는<br>배우자 |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br>(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    | 0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br>또는<br>배우자 | •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견본주택에 비치   |
|                 |    | 0           | 입양관계증명 또는<br>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br>또는<br>배우자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다자녀<br>특별공급     |    | 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br>자녀       |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br>•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br>•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0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직<br>계존속     |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br>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br>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0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                 |    | 0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br>자녀      | • 본인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또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br>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br>• 자녀 : 만 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br>발급   |
|                 |    | 0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본인<br>또는<br>배우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br>• 출산특례 청약신청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견본주택 비치)   |

| 구분           | <u>서류</u><br>필수 | 유형<br>추가<br>(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0               |                   | 자격요건 확인서                | -                         | •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견본주택에 비치 (혼인기간, 월평균 소득, 자녀수 등)   |
|              | 0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주택공급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br>•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              |                 | 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              |                 | 0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br>또는<br>배우자           |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br>(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                 | 0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br>또는<br>배우자           | •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견본주택에 비치   |
|              |                 | 0                 | 입양관계증명 또는<br>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br>또는<br>배우자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신혼부부<br>특별공급 |                 | 0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직<br>계존속               |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br>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1202         | 0               |                   | 소득증빙서류 (하단 표2 참고)       | 본인 및<br>만19세이<br>상<br>세대원 |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포함) 전원의 소득입증서류<br>※ 단, 청약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br>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 0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br>만19세이<br>상<br>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포함)<br>(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              |                 | 0                 | 비사업자확인각서                | 본인 및<br>만19세이<br>상<br>세대원 | •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니며 소득이 없는 경우)  |
|              |                 | 0                 | 부동산 소유현황<br>(하단 표4 참고)  | 본인 및<br>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br>•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br>신청 결과) 발급 시(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b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견본주택에서 조회내역 확인(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필수 지참) |
|              |                 | 0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본인<br>또는<br>배우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br>• 출산특례 청약신청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견본주택 비치)   |
|              | 0               |                   | 노부모부양 가점 기준표            | 본인                        | •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견본주택에 비치 (청약 가점점수 산정표)   |
| 노부모부양        | 0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직<br>계존속               | • 청약 신청자(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br>위한 필수 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br>"전체포함"으로 발급)   |
| 특별공급         | 0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직<br>계존속               |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필수 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0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직<br>계존속               |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제출<br>-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br>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 불가<br>※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              | 서류유형 |             |                         |                           |  |
|--------------|------|-------------|-------------------------|---------------------------|--|
| 구분           | 필수   | 추가<br>(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0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br>자녀                | • 본인 : 만 30세 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br>• 자녀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br>포함하여"상세"로 발급  |
|              |      | 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주택공급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br>•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br>-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0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직<br>계비속               | • 만30세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하는 경우<br>※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0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br>직계비속               |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br>-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br>-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br>※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비속의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              |      | 0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본인<br>또는<br>배우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br>• 출산특례 청약신청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견본주택 비치)  |
|              | 0    |             | 국민건강보험<br>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br>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br>-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              |      | 0           | 국민건강보험<br>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br>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br>-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              | 0    |             | 자격요건 확인서                | -                         | •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견본주택에 비치 (월평균 소득, 소득세 납부 등)   |
|              |      | 0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직<br>계존속               |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br>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0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0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에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 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주택공급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경우  |
|              |      | 0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br>또는<br>배우자           |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br>(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생애최초<br>생애최초 |      | 0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br>또는<br>배우자           | •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견본주택에 비치  |
| 생애최초<br>특별공급 |      | 0           | 입양관계증명 또는<br>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br>또는<br>배우자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0    |             | 소득증빙서류 (하단 표2 참고)       | 본인 및<br>만19세이<br>상<br>세대원 |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포함) 전원의 소득입증서류<br>※ 단, 청약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br>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0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br>만19세이<br>상<br>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br>(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문서 제출가능 /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              |      | 0           | 비사업자확인각서                | 본인 및<br>만19세이<br>상<br>세대원 | •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니며 소득이 없는 경우)   |

|  |    | S = 1   |                          |             |  |
|--|----|---|--------------------------|-------------|--|
| 구분   | ᆔᄉ | ·유형<br>추가<br>(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0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br>(하단 표3 참고) | 본인          | •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br>※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60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br>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   |
| 아는 보인 및 이 보고 사고 보고 |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br>•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br>신청 결과) 발급 시(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b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견본주택에서 조회내역 확인(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필수 지참) |                          |             |  |
| 제3자  | 0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b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대리인신청  | 0  |   | 위임장                      | 본인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견본주택에 비치   |
| 시 추가사항   | 0  |   |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br>※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부적격통보를<br>받은 자   |    | 0   |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br>•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 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br>•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0   |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등          | -           | │• 기타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
| 전세피해자  |    | 0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 본인또는<br>세대원 |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br>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br>※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br>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br>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

## ■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제출서류

|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br>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br>※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br>※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br>※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확인서(직인날인) | ① 해당 직장<br>② 해당 직장, 세무서                |
| 근로자  | 금년도 신규취업자<br>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br>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br>※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호봉인<br>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br>※ 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 계산하여 추정함                | ①, ② 해당 직장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br>②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br>전년도 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①, ② 해당 직장, 홈택스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br>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br>(건강보험증상<br>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br>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br>※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 재직증명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① 해당 직장<br>② 세무서                       |
|      | 일반과세자 /<br>간이과세자 /<br>면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br>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①, ② 세무서                               |
| 자영업자 | 신규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br>②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br>③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br>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 세무서 또는 등기소<br>② 국민연금관리공단<br>③ 세무서    |
|      | 법인대표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br>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인 날인)<br>③ 전년도 재무제표 원본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br>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br>⑤ 재직증명서   | ① 세무서<br>② 세무서, 해당직장<br>③ 세무서<br>④ 등기소 |
| 보험!  | 고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급여명세표(직인날인)   | ① 해당 직장, 세무서                           |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 ② 해당 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행복복지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직인 날인)<br>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br>※ 금년도 신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br>※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 | ① 세무서, 해당 직장<br>② 해당 직장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br>②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 ① 견본주택에 비치<br>② 세무서            |
| 농업인                                |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①행복복지센터                        |
| 기타<br>(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br>세대 한함) |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 내역)<br>②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기간 징구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육아휴직 기간명시)  | ① 거주지 관할구역<br>고용센터 등<br>② 해당직장 |

- ※ 상기 소득증빙 관련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상기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
|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자격입증 서류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 세무서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br>(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br>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납부내역증명<br>포함/종합소득세 납부<br>자)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
| 소득세 납부<br>입증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br>(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br>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br>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br>② 납세 증명서 및 납부내역 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에 한함)<br>※ 결정세액 환급확인자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추가 제출<br>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br>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①,② 세무서<br>③,④ 해당직장,<br>세무서 |

- ※ 상기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상기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표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 제출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해당자격      |             | 자산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부동산 소유현황이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br>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br>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br>(www.iros.go.kr)<br>③ 해당 행정복지센터 |
| 있는경우      | 추가<br>(해당자) |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br>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 ①,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br>③ 서울시 이택스, 위택스                   |

| 해당자격               | 자산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br>(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br>(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br>④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 ④ 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 축산과, 토지 이음                      |
| 부동산 소유현황이<br>없는 경우 |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b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br>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자치단체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br>※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br>(www.iros.go.kr)<br>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

<sup>※</sup>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 <표5>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제출서류

| 7.0   | 서류유형 |             | WELLE.                |             |   |
|-------|------|-------------|-----------------------|-------------|---|
| 구분    | 필수   | 추가<br>(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0    | ( 0 . 1,    |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          | -           | •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견본주택에 비치 (청약신청 유형, 가점, 주택소유 등)   |
|       | 0    |             | 서약서 및 확약서             | -           | •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견본주택에 비치   |
|       | 0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견본주택에 비치   |
|       | 0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br>※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 0    |             | 인감증명서 또는<br>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             | 인감도장                  |             | • 인감증명서와 인장 대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
|       | 0    |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 본인          |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br>발급  |
|       | 0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 본인          |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0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 공통서류  | 0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br>(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개명자는 개명 전 서류 포함)   |
|       |      | 0           | 복무확인서                 | 본인          |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br>•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br>※ 군 복무 기간을 명시  |
|       |      | 0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 배우자         |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br>•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br>발급  |
|       |      | 0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 주택공급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br>•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
|       |      | 0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 본인또는세<br>대원 |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br>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br>※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br>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br>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br>사본 |
| 해외근무자 | 0    |             | 해외체류(단신부임)관련          | 본인          |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

<sup>※</sup> 상기 자산입증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포함합니다.

| 구분     | <u>서류</u><br>필수 | 유형<br>추가<br>(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단신부임) |                 | (1011)            | 입증서류                |                    |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br>발급내역 등<br>•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br>※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br>불인정<br>※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        |                 | 0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br>등 | 본인 및<br>세대원        |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br>※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br>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 0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배우자 및<br>세대원<br>전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br>※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br>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br>※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 로 설정하여 발급  |
| 가점제    |                 | 0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0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 피부양<br>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br>확인<br>(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br>※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0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피부양<br>직계존속        |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        |                 | 0                 | 출입국사실증명원            | 피부양<br>직계존속        |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br>-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br>※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        |                 | 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br>직계비속        |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        |                 | 0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 피부양<br>직계비속        |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br>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br>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0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피부양<br>직계비속        |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0                 | 출입국사실증명원            | 피부양<br>직계비속        |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br>-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br>-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br>※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비속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        |                 | 0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배우자                | •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br>-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br>-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        |                 | 0                 | 당첨사실 확인서            | 배우자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br>발급<br>-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 구분                     | 피스 | 유형<br>추가<br>(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 0                 | 국민건강보험<br>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br>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br>-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내역) |
|                        |    | 0                 | 국민건강보험<br>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br>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br>-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 제3자<br>대리인신청<br>시 추가사항 | 0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b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0  |                   | 위임장               | 본인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견본주택에 비치  |
|                        | 0  |                   |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br>※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부적격<br>통보를 받은<br>자     |    | 0                 |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br>•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br>•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0                 |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등   | -           | • 기타 부적격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

-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 수도권 : 1년
- 2. 수도권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단, 최저가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최저가점과 동일한 점수를 가진 신청자 모두가 당첨된 경우에만 정당당첨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동일 점수 신청자 중 일부는 당첨되고 일부는 낙첨(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당당첨자로 인정할 수 없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정 및 유의사항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구분         | 일정  | 계약체결 장소                |
|------------|---|------------------------|
| 당첨자 계약체결   | 2025.08.09.(토) ~ 2025.08.11.(월) , 10:00 ~ 16:00 |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견본주택      |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 당첨자 계약 체결 후 별도 통보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314-7번지)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토록 통보받 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101동 501호 계약자 → '1010501홍길동' / 101동 1201호 계약자 → '1011201홍길동')

##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 서류 | 유형          |                                       |      |   |  |  |
|---------------|----|-------------|---------------------------------------|------|---|--|--|
| 구분            | 필수 | 추가<br>(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 0  |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 본인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
|               | 0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br>※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
|               | 0  |             | 인감증명서<br>(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br>※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본인 방문<br>계약 시 | 0  |             | 인감도장                                  | 본인   | • 인감증명서와 대조   |  |  |
|               | 0  |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및<br>주택취득자금 조달 및<br>입주계획서 | 본인   | •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견본주택에 비치   |  |  |
|               | 0  |             | 수입인지(인지세)                             | 본인   | • 해당 세대의 공급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 전자수입인지<br>- 수입인지 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br>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

|                | 서류 | 유형          |                        |     |  |
|----------------|----|-------------|------------------------|-----|--|
| 구분             | 필수 | 추가<br>(해당자) | 해당서류 발급:               |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                        |     | • 아파트 공급계약 :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50%씩 균등납부<br><수입인지 구입처><br>①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br>②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                |    | 0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br>자격서류 일체 | 본인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0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b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대리인 방문<br>계약 시 | 0  |             | 위임장                    | 본인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견본주택에 비치   |
|                | 0  |             |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br>※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PC 및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중도금, 잔금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계약금 1차 | 하나은행 | 2019-31029-042-37 | 신한자산신탁(주) |
| 계약금 2차 |      | 계약 체결 시 가상계좌 부여   |           |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견본주택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 및 공급계약 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102동 1301호 홍길동 → 01021301홍길동)
- 계약금 납부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 수납 불가)
- ┃• 계약금1차는 상기계좌로 납부해야하며, 계약금2차,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 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 ┃• 계약금 납부 가상계좌 및 공급계약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모계좌(하나은행 201-910040-15104 예금주: 신한자산신탁(주))로 관리됩니다.

#### ■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기간 내에 견본주택 방문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당첨자는 견본주택 내 체류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계약진행 등의 시간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세대원,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에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 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청약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혼인·출산특례 해당자 제외)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약금으로써 사업주체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주택의 당첨자 지위가 우선시 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무효화 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되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부동산실거래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부동산실거래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소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등에 준합니다.

####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거소 요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대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협약이 미체결 되거나, 대출협약 체결의 지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리를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 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연체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공급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5%)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5%(계약금)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 완납 후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에 따라 중도금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약정 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5%) 완납 시 무이자 대출 조건으로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건설지역인 의정부시는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세대당 2건(기존 보증 이용건수를 합산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융자지원 부분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금액은 금융기관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축소 될 수 있으며, 특히 입주시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보비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 등에 의거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이의제기 및 보상등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발코니 확장 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원, VAT포함)

|                |            | -11.01.   |            |            |
|----------------|------------|-----------|------------|------------|
| 주택형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 (10%) | 중도금 (10%)  | 잔금 (80%)   |
| T 40 (7 7 ± 1) | 0007       | 계약시       | 2025.11.25 | 입주지정일      |
| 59A            | 20,500,000 | 2,050,000 | 2,050,000  | 16,400,000 |
| 59B            | 19,000,000 | 1,900,000 | 1,900,000  | 15,200,000 |
| 59C            | 19,000,000 | 1,900,000 | 1,900,000  | 15,200,000 |
| 84A            | 22,500,000 | 2,250,000 | 2,250,000  | 18,000,000 |
| 84B            | 22,500,000 | 2,250,000 | 2,250,000  | 18,000,000 |
| 84C            | 22,500,000 | 2,250,000 | 2,250,000  | 18,000,000 |

####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본 주택은 기착공 아파트로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중이며, 공정상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은 불가합니다.
- ▶• 기시공된 발코니 확장 등의 변경 등 일체의 추가공사를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품질(타사 제품 포함)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업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 등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해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계약금     | 하나은행 | 2019-31037-040-37 | 신한자산신탁(주) |
| 중도금, 잔금 |      | 계약 체결 시 가상계좌 부여   |           |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견본주택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 상기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는 아파트 공급금액, 추가 선택품목 금액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하나은행 / 201-910041-34804 / 신한자산신탁(주))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01동 101호 :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

- 계약금 납부 명의가 계약자와 상이(타인명의, 입금자명 식별불가 등)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 임을 지지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원, VAT포함)

| 품목           |                     | 주택형(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
|--------------|---------------------|------------------------------|---------------|-----------|------------|-----------|-----------|
|              |                     | 구력왕(취급표기)                    | 0 8 8 7       | 계약시       | 2025.11.25 | 입주지정일     |           |
|              | 부분설치                | 총 2개소(거실, 침실1)               | 59A, 59B, 59C | 4,300,000 | 430,000    | 430,000   | 3,440,000 |
| 시스템          | 총 3개소(거실, 침실1, 침실2) | 84A, 84B, 84C                | 6,200,000     | 620,000   | 620,000    | 4,960,000 |           |
| 에어컨<br>(일반형) | 저시서뉘                | 총 4개소(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 59A, 59B, 59C | 7,500,000 | 750,000    | 750,000   | 6,000,000 |
| 선실<br>       | 전실설치                | 총 5개소(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주방) | 84A, 84B, 84C | 9,800,000 | 980,000    | 980,000   | 7,840,000 |

- ┃-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및 실외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점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설비, 천정구조, 소방시설물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시공 시 설치되는 제품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장비로부터 운전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설치안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체결 이후 추후 옵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시공상 공정률로 인해 일정시점 이후에는 옵션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주택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적절한 제품이 설치됩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 가전, 가구, 마감, 조명 등

(단위:원, VAT포함)

| 품목          |                    | 59A       | 59B       | 59C       | 84A        | 84B        | 84C        |
|-------------|--------------------|-----------|-----------|-----------|------------|------------|------------|
| 바닥마감 고급화    | 광폭 강마루             | 700,000   | 700,000   | 700,000   | 900,000    | 900,000    | 900,000    |
| 미크미션 자리자    | 헤링본 강마루            | 1,300,000 | 1,300,000 | 1,300,000 | 1,800,000  | 1,800,000  | 1,800,000  |
| 주방상판/벽체고급화  | 세라믹타일 A/B (2종)     | 7,200,000 | 7,200,000 | 7,200,000 | 11,100,000 | 11,100,000 | 11,100,000 |
| HIE OLIUTIA | 비스포크(4도어+김치+냉동+냉장) | 6,400,000 | -         | -         | -          | -          | -          |
| 빌트인 냉장고     | 비스포크(변온+김치+냉동+냉장)  | -         | 7,400,000 | 7,400,000 | 7,400,000  | 7,400,000  | 7,400,000  |
| 국탑          | 쿠첸 / CEN-IF3A0NBA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I- 상기 옵션금액의 납부방식은 계약금 10%(계약시), 중도금 10%(`25.11.25), 잔금 80%(입주시)의 방법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 추가 선택품목 금액 납부계좌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계약금     | 하나은행 | 2019-31022-039-37 | 현대건설(주) |
| 중도금, 잔금 |      | 계약 체결 시 가상계좌 부여   |         |

-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견본주택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 납부계좌는 아파트 공급금액, 발코니확장 금액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공급계약 체결 이후 계약일정 별도 통보 예정이며, 공정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옵션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일정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소요자재를 선 발주를 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 대금에 대하여 공급주체는 소비자 상대 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1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사항이고,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스프링클러, 환기구, 등기구, 배선기구, 스위치 등의 위치, 수량, 종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여건에 맞게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별 추가 선택품목의 상품구성, 적용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타입의 품목은 설치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공사 시작 이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계약변경 및 해제가 불가하며, 해지 시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가 인허가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

| 구분                | 내용  |
|-------------------|---|
|                   | 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br>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br>◎ 계약 전 사업부지 주변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도시계획 시설 포함)이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br>합니다.<br>◎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 ◎ H오토존, H위드펫은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br>◎ H오토존 설치와 관련하여 주차대수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br>◎ H위드펫 설치와 관련하여 기존 계획된 시설이 축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br>○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   |
|                   | 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일부 일조, 조망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로등, 야간 조명, 단지 내 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단지내 레벨차이, 인접세대 등으로 인해 소음, 빛공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 철도, 공원, 통행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빛공해,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급배기시설(환기구 등),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에어컨 실외기 및 주방배기구 인접으로 인한 소음, 냄새 및 해충 등 환경권 침해  |
|                   | 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물은 상세설계에 의하여 위치/형태/크기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주변 건축물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옹벽·석축, 단지 내 휴게공간·필로티·어린이놀이터·드라이에어리어(D/A)·채광창(Top Light), 자전거보관소, 옥외엘리베이터, 옥외계단, 에어매트 설치<br>공간,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소음 발생, 미세한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단지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소음 발생,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도시철도 1호선과 인접함에 따라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의 영향이 있을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 주변현황<br>/<br>단지배치 | <ul> <li>○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철도, 도로, 공원, 보행로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 시설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계획 레벨(도로 등)에 따라 실 시공시 단지레벨 및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시공범위 외 기반시설의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li> <li>○ 분양 홍보자료에 포함된 서부로로 연결되는 회룡IC는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 시설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시공범위 외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li> <li>○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등은 외부인이 이용 및 통행할수 있습니다.</li> </ul>   |
|                   |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없는 사항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br>  ◎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및 파고라 등의 크기, 형태는 추후 실시설계 진행에 따라 변형될 수 있습니다.<br>  ◎ 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의 마감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 본 아파트에 입주예정인 초등학생은 의정부호원초 배치될 예정이나,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환경 변경에 따라 학생배치방안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학생배치 여건, 사업계획(입주시기, 공급면적, 세대수 등) 및 인근 지역의 타개발계획 변경에 의하여 학생배치 계획이 변경될 시에는 학생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ul> <li>○ 본 아파트에 입주예정인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 중학교 학군, 고등학교 학군에 분산 배치될 예정입니다.</li> <li>○ 당해 지구 내 교육시설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합니다.(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학생배치관재팀)</li> <li>○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li> <li>○ 본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중로 1-25호선(1구간)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25년 12월 31일, 대로 2-5호선(1구간)은 2025년 12월 31일 대로 2-5호선(2구간)은 2027년 12월 31일 단계 별로 준공될 예정으로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
|                   | ◎ 단지내 일조장해 분석결과 102동,103동의 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세대 비율 낮은 수준으로 해당동의 청약당첨자는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아파트<br>주동         | · 건물 외부장식물에 의한 조망 및 일조 침해, 빛반사로 인한 빛공해<br>· 지하주차장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제연휀룸/우수조/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의 탈취기, 송풍기, 실외기 등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및 돌출물/시설물(의장용 구조물,<br>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태양집광판, 피뢰침 등) 등으로 인한 일조, 빛공해, 조망간섭 등의 환경권 침해<br>· E/V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발생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br>◎ 106동 옥상에는 소화수조설비가 설치되므로 이로 인해 소음이나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br>◎ 본 단지 옥상 일부공간에 방공포 설치를 위한 구역이 있으며 유사시 군부대에서 방공포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br>◎ 단지 출입구의 문주는 형태 및 디자인, 배치, 규모, 마감재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br>공용부          | <ul> <li>○ 저층부 세대의 경우 석재 마감으로 인해 외부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li> <li>○ 공동주택 주차장은 각 동별 주차공간의 분포 및 위치에 따라 이용 시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또한, 경차, 장애인전용, 확장형주차, 전기차, 일반 주차대수 등의 분포는 일부 동에 편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배치 및 사용 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 커뮤니티(휘트니스, 독서실 등) 설계 및 제공되는 시설류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였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li> <li>○ 옥탑, 옥상 및 지하주차장 신축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미시공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백업재 및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li> <li>○ 각 동 옥상 상부에는 태양광 패널이 계획되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수량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됩니다. 또한, 시야 간섭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및 빛반사로 인한 및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li> </ul> |

구분 내용 실 시공시 연돌효과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용부 창호의 실시 위치, 개소,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천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준공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전기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트렌치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에폭시코팅 및 주차라인마킹은 하지 않습니다.(트렌치커버는 측면만 시공) ◎ 엘리베이터홀, 부대시설의 경량천장틀 시공부위에 천장틀의 처짐 등 기능장, 안전상 지장이 초래 되지 않을 경우 마이너찬넬보강은 제외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해당 천장고 조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하단 삽입표 양식 표준공급계약서 참조> · 지하 1.2층 - 주차장 차로 높이 2.7m(주차공간 2.1m 이상) - 출입구 높이 2.7m · 지하 3층 - 주차장 차로 높이 2.3m(주차공간 2.1m 이상) - 출입구 높이 2.3m ◎ EPS, TPS, AD/PD, PIT, ST, AV 등의 내부벽체(ALC(경량콘크리트블록), 조적벽체, 콘크리트벽체)는 초벌미장 시공을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체 미장은 E/V 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합니다. ◎ 시멘트 몰탈 마무리두께는 15mm 내외로 하며 바탕면에 따라 오차범위 5mm를 포함합니다. ◎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50mm범위 내에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창의 개폐여부 및 방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홀, 공용부의 벽체타일 및 세대 아트월은 에폭시 떠붙임 공법으로 시공시 4~5지점(600\*600기준) 지지로 시공합니다. 엘리베이터홀 지하~지상1층 바닥 및 일부 벽체 마감은 석재로 시공될 수 있으며 시공 여건에 따라 20~30mm 두께의 석재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무늬코트 도장 마감인 경우, 상도코팅은 현장여건에 따라 무광으로 시공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최상층 및 지하주자장, 지상 일부구간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 ◎ 건축물의 높이가 60m 초과시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5분의4가 되는 지점에 돌침형피뢰침이 설치되어 건물외벽(특정세대 발코니앞)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 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 법적 의무대성으로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은 법적개소 이상 계획 하였으며, 추후 설치위치 및 개소수는 법적개소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 다.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주차구획 및 각 동별 이용 가능한 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동 세대별 접근 거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 위치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탑 구조물 및 장식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건식공법(모듈러, PC 등)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및「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 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아파트"지붕 및 지상 일부구간에 태양광 집광판,경관조명, 공청TV안테나,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상세계획(설치면적, 위치, 형태, 사 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옥외안테나) - 옥상층 : 101동, 103동, 105동, 107동, 109동, 111동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중계장치) - 옥상층 : 101동, 103동, 105동, 107동, 109동, 111동 - P1동지하2층/P2동지하1층 : 휀룸(4개소) · 태양광 집광판 설치 예정 위치 - 전동 옥상층 일부 세대는 경관 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에는 옥외보안등, 기타 보안시설 등에 의한 빛 공해 및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등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됩니다. 엘리베이터에 면하거나, 최상층세대 및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 운행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 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물의 발전기실에는 비상발전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점검 등으로 인한 기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자량출입구 통행 개선을 위하여 차단기가 추가설치, 삭제, 위치이동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도로폭 확대 및 보행로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 사생활 침해, 소음 빛공해 분진 냄새 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전기실 / 발전기실/ 기계실 / 제연FAN / 우수조 / 탈취기 / 송풍기 / 주방 배기 등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및 돌출물/시설물(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태 양광집광판, 피뢰침 등) 등으로 인한 일조, 빛공해, 조망간섭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E/V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발생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본 공사시 효율 개선 등의 사유로 설치위치, 수량, 크기, 각도, 높이, 사양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 ◎ 본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등이 설치 될 예정이며, 기기 작동 시 하부 세대에 소음, 냄새, 그을음,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br>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      | ◎ 주차장 램프 진출입로에 설치되는 출차경광등은 최소 50dB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본 단지의 커뮤니티시설,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안전승하차공간 등과 인접한 일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확보에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진동, 냄새 측면에<br>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 │◎ 공동주택 옥상, 동 출입구, 부대시설, 조경구간 등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높이, 재질,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은 골조난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하부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의 단위세대는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는 시공시 변경 ┃   |
|      | □ 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필로티가 적용된 각 동 출입구는 구조에 따라 천장고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일부 옥탑지붕층에 군사작전의 제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군부대작전보안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기 바라며, 당첨자(예비 당첨자)는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 101동, 102동, 108통 필로티(1층)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단지 지면으로부터 바닥까지 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br>◎ 각 동의 엘리베이터 홀은 법적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마감재의 종류 및 두께, 시공 공법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ul> <li>◎ 동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침해가 발생되는 세대가 일부 존재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배관이 천정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펜던트 등),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li> </ul>                                     |
|      | 의 움측됩니다.<br>◎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약자"에게 통보<br>하여야 합니다.   |
|      | ○ "사업주체"는 공사 시행 중 "계약자"의 위 표시재산을 품질관리 등을 위한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샘플하우스 사용 이후 원상복구를 하고 "계약자"에게 인도하기로 합니다.   |
|      |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br>│ ◎ 본 공사 시 세대 천정 환기구는 실내 환기 성능을 고려하여 크기, 디자인, 위치,개소가 결정됩니다.<br>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      | │◎ 본 공사시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및 천연가공석(거실 벽, 주방 벽/상판,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무늬의 흐름 및 순서는 임의로 ┃<br>│  시공되어 모델하우스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
|      | ◎ 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설치내용,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배선기구,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디자인, 위치, 설치방향, 사양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br>◎ 견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도기류, 악세사리류 및 욕실FAN 등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 면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 빌트인 냉장고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br>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 │ ◎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br>  ◎ 각 세대 침실에 세대분전반과 세대단자함이 통합형으로 설치 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 기타 마감이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br>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br>  ◎ 등기구 보강은 "원형 매입등 φ800, 사각 매입등 800*800" 규격 이상에만 해당됩니다.          |
|      | ◎ 참실, 욕실 등의 벽체 투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사용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br>  하여야 합니다.  |
|      | ○ 본 공사 커텐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br>○ 주방씽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됩니다.<br>○ 유상옵션품목은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      | ○   |
|      | ◎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보일러가 제공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다. 또한, 보일러 설치 위치에 따라 유지보수공사, 세탁/건조기 이동이 필요할 수 있으며, 명확히 인<br>지하고 계약한다.   |
|      | │◎ 실외기가 침실 또는 거실에 면한 발코니에 설치되어 실외기 가동시 소음이나 진동이 전달 될 수 있다.<br>│◎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은 확장형 기준입니다.  |
|      | │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적용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br>  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      |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세대 천장의 각 종 시설물(배관, 덕트 등)들로 인한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폭, 높이 등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전 세대 발코니 확장 시공에 따라 제품 사용성 개선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세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br>전본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 선론수텍과 나를 두 있습니다.<br>◎ 실내습도 및 사용자의 생활 환경이나 습관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 등 창호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구분 내용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본 공사시 마감재 설치 등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자"의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의에 의거 계약함을 확인합니다. ◎ 본 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 및 색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침실 반침장, 신발장, 욕실장, 거울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 /천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③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 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계약자"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침실, 거실, 주방의 조명스위치는 이동, 취침준비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소등되는 회로가 몇 초간 지연 후 소등되는 조명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Hi-oT)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합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Hi-oT)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하이오티 연동된 IoT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Hi-oT)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의 사유로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갯주,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전열교환 환기장비 및 덕트가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 세탁실 천정에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HEPA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 1~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다. 이후 필터구입 및 교체는 입주자분입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겸용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며, 본 시공시 냉방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는 배관 점검을 위한 욕실 점검구가 설치되며,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 규격,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침실 내에 세대분전반과 세대단자함이 통합형으로 시공되며, 사용성과 세대요건을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자동문 출입이 가능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보조 출입키(카드형 RF키) 는 세대당 2개가 지급 됩니다. 스마트폰을 인증 공동현관 출입 시스템 및 스마트폰 주차위치 인식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주차위치 인식 시스템은 세대별 등록된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전이 노출됩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가스배관, 가구장, 악세서리 등 평형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이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으며 평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기 바랍니다. ◎ 세대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장소별 색온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세대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홈네트워크 설비 및 대기전력 자단 시스템유지 등에 따라 미 입주시에도 일부 전기사용량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세대분전반 차단시 홈네트워크설비, 방범 및 경보 알람이 작동하지 않습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가구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으며,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 인입으로 인해 주방 상판이 타공 될 수 있습니다. 주방 상투장 위쪽으로 가스 배관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사용상의 문제가 없는 한 하자 사항이 아님을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침실 벽제, 욕실천정 내부 벽제, 다용도실 벽제, 실외기실 벽제, 가구 상부장 내부에 내부 시설 점검을 위한 내시경 점검구가 설치 될 수 있으며, 마감을 위한 덮개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벽체 등 시멘트 몰탈 떠붙임 공법의 뒷채움은 80%로 시공합니다. ◎ 대피공간 없이 발코니(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 는 구조)가 설치되는 경우, 피단구의 설치 위치는 증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최하층 제대는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가 제외됩니다.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는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며,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다리가 전개될 수 있도록 주변에 물건을 적치할 수 없으며 항시 실외기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으며, 또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소음 및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시 제품개발에 따라 기능이나 디자인, 색상, 설치위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단위 세대 내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세대통합분전함,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제품사양, 설치방향, 개소, 디자인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 니다 제품 사용성 개선 및 현장 여건 상황에 따라 온도조절기 및 조명스위치는 통합형 또는 분리형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방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되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방, 침실에 설치되는 통합형 전자식스위치의 온도조절기 및 조명스위치는 동일한 색상일지라도 제조사별 제작 및 도색방식이 상이하여 서로 이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 내부에 설치되는 조명은 전열교환 환기장비 및 기타 배관에 의해 일부 가려질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세대여건을 고려하여 견본주택과 위치가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 ○ 시스템 에어컨 유상옵션 미선택시 홈네트워크(하이오티)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습니다.<br>○ 씽크대 하부의 가구 디자인은 설비기기가 설치됨에 따라 견본주택 사양과 내부 폭 가구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세대 현관문 및 그외 철재/PD도어류의 도장, 색상, 디자인 및 세부 디테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고성능 완충재(H 사일런트 홈시스템)는 주방, 거실, 안방에 적용되며 일부 공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br>○ 공용,부부욕실에 설치된 타일 및 마감재는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실제 마감은 공용홀 전시 부스 마감재로 시공됩니다.<br>○ 거실 및 복도에 설치된 세라믹 타일 및 마감재는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실제 마감은 도배지로 설치됩니다.   |
| 국공립<br>어린이집 | <ul> <li>○ 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어린이집은 독립형으로 위치하며 101동과 102동 사이에 위치합니다.)</li> <li>○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의정부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li> <li>○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7호에 따른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거나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은 관련 법규 및 관할 관청인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의정부시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li> <li>○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에게 어린이집 정원의 70% 까지 우선적으로 입소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민 자녀 우선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단지 외부에서 배정될 수 있으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li> <li>○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의정부시(의정부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 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li> </ul> |

# 11 기타

-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의2,「주택법」제48조의2,「주택법 시행령」제53조의2 및 3,「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2 및 3)
- 당 사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주택공급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초과 단지의 경우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사항 제출 → ⑥ 보수 → ⑦ 보수사항 확인
- ▣ 입주예정일 : 2026년 04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건축법」제48조 및 제48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구분   | 등급           |
|------|--------------|
| 내진능력 | VII - 0.204g |

-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등급, Ⅷ-최대지반가속도)으로 표기
- 부대복리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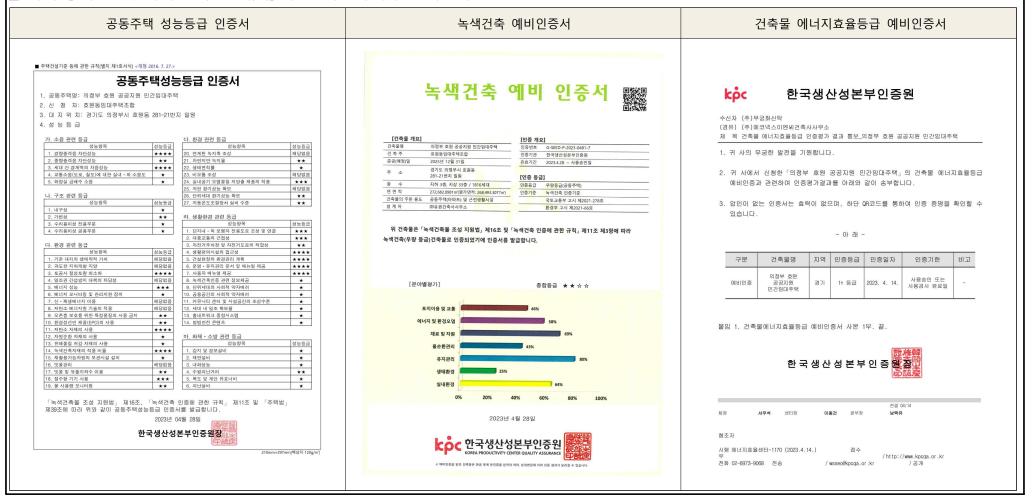
내용

작은도서관, 독서실(남/여), 다함께돌봄센터, 키즈플레이룸, 피트니스, 사우나(남/여), 골프연습장, 워크라운지, 생활지원센터, 게스트하우스, 경로당, 어린이집 등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 2)

| 구분   | 주차장 차로높이           | 주차장 출입구 높이 |  |
|------|--------------------|------------|--|
| 지하1층 | 2.7m (주차공간 2.1m이상) | 2.7m       |  |
| 지하2층 | 2.7m (주차공간 2.1m이상) | 2.7m       |  |
| 지하3층 | 2.3m (주차공간 2.1m이상) | 2.3m       |  |

-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주택법」제39조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                            | 구분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필요 시)                                       |  |
|----------------------------|---------------------|------|---|--|
| 건축부문 설계기준<br>(제7조 제2항 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 준수                 |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  |
|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
|                            |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76   | · 신국물의 에디지글락글세기군」제0소 제1오에 의한 글세층 되기소신 군구<br>                    |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  |
|                            |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다목)     | 적용   | 가정용보일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  |
|                            |                     |      | 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  |
| 기계부문 설계기준                  | 고효율 전동기(라목)         |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  |
| (제7조 제2항 제2호)              |                     | 적용   |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  |
| (*11, = *1123 * 112=)      |                     |      |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  |
|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용   |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  |
|                            |                     |      |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  |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  |
|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  |
| 전기부문 설계기준<br>(제7조 제2항 제3호)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이며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시 공급계약서에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공급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른 보증기관 및 보증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서번호                  | 보증금액(원)           | 보증기간  |
|------------------------|-------------------|---|
| 제01282025-101-0003900호 | ₩ 330,955,560,000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br>(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 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u>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u>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합니다.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l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 (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시행자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여야 합니다.

#### ■ 관리형토지신탁 특약사항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호원동임대주택조합, 시행수탁자 신한자산신탁(주)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하며 본 조의 모든 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 ① 본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시행수탁자 신한자산신탁(주)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하여 시행수탁자 신한자산신탁(주)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시행위탁자인 호원동임대주택조합이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② 본 입주자모집공고상 내용 외 "갑"을 제외한 어떠한 당사자 간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을"은 "갑"에게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③ 본 사업은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개별 계약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또는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시행위탁자인 호원동임대주택조합과 시행수탁자인 신한자산신탁(주)이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시행수탁자(매도인)인 신한자산신탁(주)의 매수인(분양자계약자)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도 본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시행위탁자인 호원동임대주택조합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 됩니다.
- ④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된 공급금액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신한자산신탁(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시행수탁자 신한자산신탁(주)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⑤ 매수인(을)은 시행수탁자인 신한자산신탁(주)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과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행위탁자인 호원동임대주택조합 및 시공자인 현대건설(주)에게 있으며, 시공자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자 교체(건축물 브랜드, 명칭 변경 포함) 시 매수인(을)은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⑥ 입주자모집공고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인인 신한자산신탁(주)은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신한자산신탁(주)이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신한자산신탁(주)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부담하며) 공급금액 반환책임 등 기타 매도인으로써의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자인 호원동임대주택조합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
- ⑦ 매수인(을)이 납부한 공급금액은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와 이와 관련한 PF대출금 상환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⑧ 시행위탁자인 호원동임대주택조합 또는 매수인(을)은 분양계약체결, 해지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해당 기한 내(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⑨ 본 관리형토지신탁 내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 모든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원 / VAT제외)

| 구분   | 건축             | 전기             | 소방 · 통신        |
|------|----------------|----------------|----------------|
| 상호   |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   | ㈜이건 종합건축사사무소   | ㈜재원종합엔지니어링     |
| 감리금액 | ₩5,507,602,000 | ₩1,003,287,098 | ₩1,139,000,000 |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분            | 사업주체 및 시행수탁사                             | 시행위탁사                                    | 시공사                      |
|---------------|--|--|--------------------------|
| 상호            | 신한자산신탁(주)                                | 호원동임대주택조합                                | 현대건설㈜                    |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동<br>(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95, 2층<br>(수진동, 세실빌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br>(계동) |
| 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 | 110111-3543801                           | 357-80-00193                             | 110111-0007909           |

- 홈페이지 주소 : https://hillstate.co.kr/s/hoeryong
- 견본주택 위치 및 문의전화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314-7번지 / ☎ 1800-7244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본 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